

행정처분의 기준(제22조제1항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같은 종합검사대행자,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또는 기술인력이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분을 한다.

- 1)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또는 명령의 기준이 지정취소 또는 해임인 경우에는 지정취소 또는 해임명령을 한다.
- 2)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기준이 업무정지 또는 직무정지인 경우에는 업무정지 또는 직무정지명령을 하되, 둘 이상의 업무정지 또는 직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.

나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다.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(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 다만,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.

라. 관할 관청은 종합검사대행자,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또는 기술인력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행정처분을 가중할 수 있다.

마. 관할 관청이 가목 또는 라목에 따라 업무의 정지기간 또는 직무의 정지기간을 가중하는 경우에도 그 정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.

바. 관할 관청은 종합검사대행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일부 사업장에서만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내용에 따라 해당 위반 사업장의 업무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.

사. 관할 관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.

- 1) 종합검사대행자,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또는 기술인력이 그 업무 또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자동차의 종합검사 업무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

2) 그 밖에 관할 관청이 위반행위의 동기·정도·결과 등을 고려해서 행정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자동차의 종합검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2호 개별기준에 따른 기준과 다르게 행정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내용	관계법령	처분 내용	
		종합검사대행자·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	기술인력
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	법 제45조의3 제1항제1호	지정취소	
나.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	법 제45조의3 제1항제2호 및 법 제46조제2항제1호	1차: 업무정지 60일 2차: 지정취소	1차: 직무정지 60일 2차: 해임
다. 자산상태의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	법 제45조의3 제1항제3호	1차: 업무정지 30일 2차: 지정취소	
라.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거짓으로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	법 제45조의3 제1항제4호 및 법 제46조제2항제2호	지정취소	해임
마. 검사 결과와 다르게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	법 제45조의3 제1항제4호 및 법 제46조제2항제2호	1차: 업무정지 60일 2차: 지정취소	1차: 직무정지 60일 2차: 해임
바.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밀도검사를 받지 않은 검사용기계·기구로 검사를 하거나 정확성이 확인되지 않은 검사용기계·기구를 사용하여 검사를 한 경우	법 제45조의3 제1항제5호 및 법 제46조제2항제3호	1차: 업무정지 30일 2차: 지정취소	1차: 직무정지 30일 2차: 해임

사. 법 제43조제2항 또는 법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검사에 필요한 검사 항목 중 일부를 생략하여 검사한 경우	법 제45조의3제1항제6호 및 법 제46조제2항제4호	1차: 업무정지 30일 2차: 업무정지 60일 3차: 지정취소	1차: 직무정지 30일 2차: 직무정지 60일 3차: 해임
아. 법 제43조제3항(법 제43조의2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45조의3제1항제7호 및 법 제46조제2항제5호	1차: 업무정지 10일 2차: 업무정지 20일 3차 이상: 업무정지 30일	1차: 직무정지 10일 2차: 직무정지 20일 3차 이상: 직무정지 30일
자. 법 제43조제6항(법 제43조의2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검사 장면 및 결과를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	법 제45조의3제1항제8호 및 법 제46조제2항제6호	1차: 업무정지 10일 2차: 업무정지 30일 3차 이상: 업무정지 60일	1차: 직무정지 10일 2차: 직무정지 30일 3차 이상: 직무정지 60일
차. 법 제43조제7항(법 제43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자동차 검사에 사용하는 기계·기구에 설정된 자동차 검사기준의 값 또는 기계·기구를 통하여 측정된 값을 조작·변경하거나 조작·변경하게 한 경우	법 제45조의3제1항제8호의2	1차: 업무정지 60일 2차: 지정취소	
카. 법 제45조제1항 또는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시설이 아닌 곳에서 검사한 경우	법 제45조의3제1항제9호 및 법 제46조제2항제7호	1차: 업무정지 60일 2차: 지정취소	1차: 직무정지 60일 2차: 해임

<p>타. 법 제45조제2항이나 법 제45조의2제3항에 따른 시설·장비 등의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</p>	<p>법 제45조의3 제1항 제10호</p>	<p>1차: 업무정지 10일 2차: 업무정지 30일 3차: 지정취소</p>	
<p>파. 법 제45조제3항이나 법 제45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업무 범위 및 기술인력에 따른 검사능력을 벗어나 검사한 경우</p>	<p>법 제45조의3 제1항 제11호 및 법 제46조제2항제8호</p>	<p>1차: 업무정지 60일 2차: 업무정지 90일 3차: 지정취소</p>	<p>1차: 직무정지 60일 2차: 직무정지 90일 3차: 해임</p>
<p>하. 법 제45조제7항(법 제45조의2제4항에서 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검사업무를 하게 한 경우</p>	<p>법 제45조의3 제1항 제12호</p>	<p>지정취소</p>	
<p>거. 법 제45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 지정을 신청하지 않거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 신고하지 않은 경우</p>	<p>법 제45조의3 제1항 제12호의2</p>	<p>① 변경 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1차: 업무정지 30일 2차: 업무정지 90일 3차: 지정취소 ② 변경 신고하지 않은 경우 1차: 업무정지 10일 2차: 업무정지 30일 3차 이상: 업무정지 90일</p>	
<p>너.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이 아닌 사</p>	<p>법 제45조의3 제1항 제13</p>	<p>지정취소</p>	

람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한 경우	호		
더.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의 해임 또는 직무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45조의3 제1항제14호	1차: 업무정지 30일 2차: 업무정지 60일 3차 이상: 업무정지 90일	
러. 법 제4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	법 제46조제2항제9호		직무정지 10일
며. 법 제66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	법 제45조의3 제1항제15호	지정취소	
버.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	법 제45조의3 제1항제16호	1차: 업무정지 10일 2차: 업무정지 30일 3차 이상: 업무정지 90일	
서.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하거나, 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	법 제45조의3 제1항제17호	1차: 업무정지 30일 2차: 업무정지 60일 3차 이상: 업무정지 90일	
어. 법 제45조의3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사업무를 한 경우	법 제45조의3 제1항제18호	지정취소	